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1 선고 2021가단1010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 론 종 결 2022. 3. 18.

판 결 선 고 2022. 4. 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,479,451원 및 그 중 205,103,449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14.부터, 44,896,551원에 대하여는 2021. 4. 8.부터,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. 9.부터 각 2021. 12. 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가. 피고 1, 2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- 나. 피고 3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김익환

별지